

사회적경제혁신센터(가칭)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19. 7. 18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118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4. 26. 강남구청장(일자리정책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27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(2019.5.13.)

“심사보류”

- 제2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(2019.7.18.)
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뉴디자인국장 : 김희주)

가. 제안이유

- 사회적경제혁신센터에서는 강남구 사회적경제기업 자원조사 및 의제발굴을 위한 생태계조성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상호협력을 통한 연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 운영함에 있어,
-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동화 거점 시설로의 통합창구 역할이 시급히 필요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바,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에 의거 강남구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 : 강남구 사회적경제혁신센터(가칭) 민간위탁 사업

○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○ 추진 필요성

- 「2019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」 서울시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 서울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강남구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설치·운영할 예정으로
-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및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이 기대되며 성장기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함
- 따라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동화 거점 시설로서의 통합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(단체)에 위탁하여 안정적·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

○ 위탁 대상 사무의 위탁 범위

-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
- 사회적경제 엑셀러레이팅(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양성)
-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(사회적경제 조직 간 연계 및 지원 등)
- 사회적경제 활성화(협업모델 개발 및 판로 지원 등)
-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

○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강남구 도산대로 128(논현동)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 3층
- 규 모 : 187.93㎡(전용면적 103.61㎡)

○ 민간위탁기간 : 2019. 7 ~ 2022. 6.(3년)

○ 수탁자 선정 방식 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

○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141,230천원

통계목	구 분	세부 집행내역	예산액
	총 계		141,230,000원
민간 위탁금	소계		141,230,000원
	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건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센터장(비상근) 1,500,000원×1명×8개월=12,000,000원 - 사무국장 2,400,000원×1명×8개월=19,200,000원 - 매니저 2,200,000원×1명×8개월=17,600,000원 - 직원 2,100,000원×1명×8개월=16,800,000원 ○ 사회보험 및 퇴직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민연금 48,800,000원×4.5%=2,196,000원 - 국민건강보험료 48,800,000원×3.23%=1,576,240원 - 장기요양보험료 1,580,000원×8.51%=134,138원 - 고용보험료 48,800,000원×1.5%=732,000원 - 산재보험료 48,800,000원×0.9%=439,200원 - 퇴직적립금 98,400,000원×0.0833×8/12=5,500,000원 	77,930,000원
	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적경제 혁신센터 사업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등 1,000,000원×4회=4,000,000원 - 사회적경제사업 역량강화 및 주민대상 교육 580,000원×10회=5,800,000원 - 사회적경제기업 정보지 발간 및 홍보영상 제작 6,200,000원×1회=6,200,000원 - 사회적경제 혁신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 12,200,000원×1회=12,200,000원 	31,000,000원

		-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실전 멘토링 300,000원×6회=1,800,000원 - 지역자원조사 DB 구축비 1,000,000원×1회=1,000,000원	
	운영비	○ 사무운영비 - 건물 관리비 2,000,000원×8개월=16,000,000원 - 업무추진비 125,000원×8개월=1,000,000원 - 여비 125,000원×8개월=1,000,000원 - 사무용품 및 교육용 교재 제작 등 3,900,000원×1식=3,900,000원 - 사무기기 대여비 300,000원×8개월=2,400,000원 ○ 공공요금 - 공공요금 및 체세 1,000,000원×8개월=8,000,000원	32,300,000원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구경남)

○ 사회적경제혁신센터(가칭)는 강남구 관내의 사회적경제기업 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과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상호협력을 통한 연대시스템 구축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거점 시설로서의 역할을 목적으로 설치·운영하는 시설로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위탁하려는 것임.

○ 한편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사업을 3년 동안 (1차:1억, 2차:1.5억, 3차:2억) 지원하고 있는 바 우리구가 2019년 3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1차로 시비 1억원을 확보하여 사회적경제혁신센터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업임. 또한 이 사업과 연계된 통합지원센터 사업도 6년간 시·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시비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임.

○ 2019년도 1차 추경예산(신규사업) 중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총사업비 7억여원이 편성되었고 사회적경제혁신센터 민간위탁금(307-05) 139,480천원이 편성되었음. 다만, 민간위탁 동의안의 소요예산 141,230천원과는 차이가 있는 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.

○ 센터의 위치는 논현동 국민연금 강남사옥으로 임차료(전세) 3억3천2백6십4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임차료 및 위치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: 사회적경제혁신센터(가칭)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. 끝.

사회적경제혁신센터(가칭)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1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4. 26.

제출자 : 강남구청장

제출부서 : 일자리정책과

1. 제안이유

- 가. 사회적경제혁신센터에서는 강남구 사회적경제기업 자원조사 및 의제발굴을 위한 생태계조성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상호협력을 통한 연대시스템 구축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 운영함에 있어,
- 나.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동화 거점 시설로서의 통합창구 역할이 시급히 필요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바,
- 다. 『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 3항에 의거 강남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강남구 사회적경제혁신센터(가칭) 민간위탁 사업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- 추진근거
 -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
 -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 - 추진 필요성
 - 「2019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」 서울시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 서울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강남구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설치·운영할 예정임
 -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및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

지원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것이 전문성이 확보되고 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이 기대되며 성장기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가 시급함

-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동화 거점 시설로서의 통합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(단체)에 위탁하여 안정정·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
- 사회적경제 엑셀러레이팅(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양성)
-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(사회적경제 조직 간 연계 및 지원 등)
- 사회적경제 활성화 (협업모델 개발 및 판로 지원 등)
-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강남구 도산대로 128(논현동)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 3층
- 규모 : 187.93㎡(전용면적 103.61㎡)

건물 전경	사무실 전경
	

마. 민간위탁기간 : 2019.7. ~ 2022.6.(3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
 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141,230천원

통계목	구 분	세부 집행내역	예산액
총 계			141,230,000원
민간 위탁금	소계		141,230,000원
	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건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센터장(비상근) 1,500,000원×1명×8개월=12,000,000원 - 사무국장 2,400,000원×1명×8개월=19,200,000원 - 매니저 2,200,000원×1명×8개월=17,600,000원 - 직원 2,100,000원×1명×8개월=16,800,000원 ○ 사회보험 및 퇴직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민연금 48,800,000원×4.5%=2,196,000원 - 국민건강보험료 48,800,000원×3.23%=1,576,240원 - 장기요양보험료 1,580,000원×8.51%=134,138원 - 고용보험료 48,800,000원×1.5%=732,000원 - 산재보험료 48,800,000원×0.9%=439,200원 - 퇴직적립금 98,400,000원×0.0833×8/12=5,500,000원 	77,930,000원
	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적경제 혁신센터 사업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등 1,000,000원×4회=4,000,000원 - 사회적경제사업 역량강화 및 주민대상 교육 580,000원×10회=5,800,000원 - 사회적경제기업 정보지 발간 및 홍보영상 제작 6,200,000원×1회=6,200,000원 - 사회적경제 혁신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 	31,000,000원

		12,200,000원×1회=12,200,000원 -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실전 멘토링 300,000원×6회=1,800,000원 - 지역자원조사 DB 구축비 1,000,000원×1회=1,000,000원	
	운영비	○ 사무운영비 - 건물 관리비 2,000,000원×8개월=16,000,000원 - 업무추진비 125,000원×8개월=1,000,000원 - 여비 125,000원×8개월=1,000,000원 - 사무용품 및 교육용 교재 제작 등 3,900,000원×1식=3,900,000원 - 사무기기 대여비 300,000원×8개월=2,400,000원 ○ 공공요금 - 공공요금 및 제세 1,000,000원×8개월=8,000,000원	32,300,000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

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영·법률·기술·세무·노무·회계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

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·시설비 등을 지원·융자하거나 구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

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